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-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

◇ 제·개정 이유

-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시행규칙 개정(2024.8.1. 시행)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에 전문분야 및 등급을 표기하도록 하고 영문경력증명서 발급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, 기술인의 경력신고 편의 제고를 위해 건설기술관련 학과 인정방법 추가, 제출서류 간소화, 경력증명서 부분발급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◇ 주요내용

가.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문분야별 등급 산정(안 별표3)

-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전문분야별 등급을 산정할 수 있도록 별표3 비교에서 전문분야 역량지수 산정 제외 규정을 삭제

나. 영문 경력증명서 발급절차 마련(안 제16조제6항, 제17조제1항제3호, 별지 제5호 서식)

- 건설기술인 해외사업 진출 지원을 위하여 영문 경력증명서 발급절차(처리기간, 구비서류) 마련, 신청서식 수정

다.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 인정방법 추가(안 별표2)

- 기술인의 경력신고 편의 제고 및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해 교육부 표준분류체계를 활용한 건설기술관련 학과의 인정 방법 추가